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
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| |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 번 호 | 1692 |
|------------|------|

2020년 9월 8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제안일자 : 2020년 7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라. 상정일자

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9월 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서윤기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2조제 5호라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7. 17. ~ 7. 24.

○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: 원안가결¹⁾

- ‘서울시 인권 기본조례’에 따라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5호라목 중 ‘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’은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

1) 택시물류과-33787(2020.8.21.)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²⁾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‘주부’, ‘학생’ 등으로 특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인권향상 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조례 개정 배경 등

-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(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)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음
- 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표는 ‘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’, ‘기본권보장 및 권리의 구제’, ‘시민참여 보장’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화였고, 동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

2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 기준

| 평가분야 | 평가항목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| 1)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
| | 2)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|
|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| 3)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|
| | 4)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|
| | 5)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) |
| | 6)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, 구제절차) |
| 시민참여 보장 | 7)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|
| | 8)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|
| | 9)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|

- 그 결과 869개 자치법규 중 62개 자치법규,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³⁾는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⁴⁾하였음

■ 고용계약이 없는 자의 범위(안 제2조)

- 현행 조례 제2조제5호⁵⁾에서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관련하여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는 ‘주부’, ‘학생’ 등이 여유시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

3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14조(설치)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"인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 4) '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립 및 이행요청'_ 인권담당관(2020. 4. 6.)
 5)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2조(정의) 5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.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

- 이는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‘주부’, ‘학생’을 특정지어 규정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계층으로 지칭하였고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
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“주부, 학생 및 직장인”이라는 특정 계층을 한정짓는 의미를 “고용계약이 없는 사람”으로 폭 넓게 규정하여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라목 중 “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”를 “고용계약이 없는 사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<u>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</u></p> <p>마. (생략)</p> <p>6. ~ 12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고용계약이 없는 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|